당 헌

[제정 2020. 1. 19.]
[개정 2021. 12. 6.]
[전면개정 2022. 11. 26.]
[개정 2024. 2. 3.]
[개정 2024. 4. 30.]
[전면개정 2024. 6. 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기본소득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권리당원이 된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비) ① 당원은 소정의 당비를 납부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 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은 권리당원에서 제외되어 당에서 실시하는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당비 미납에 의한 권리 제한의 세부 요건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은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시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④ 권리당원은 당비 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7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당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각 선출 단위 선거구의 1/3 이상을 여성명부 선거구로 배정한다.
② 여성명부 선거구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당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장애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각 선출 단위 선거구의 10%를 장애인명부 선거구로 배정한다. 장애인명부 선거구에 한하여 해당 당직 총수를 초과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장애인명부 선거구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당무위원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정책연구소장
7.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8. 시·도당 위원장(상임)
9.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0.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1. 지역위원장
12.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상임)
13. 예산결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당기위원장
14. 선출직 전국대의원

③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300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출직 대의원의 수, 종류, 선출기관,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대의원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회기와 같으며,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권한)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헌의 제정 및 개정
4. 시·도당 해산 승인
5. 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6. 공직후보자 인준(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7. 당무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의결
8.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9.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2조(소집) ①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 결정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당무위원회 산하에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④ 전국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6. 시·도당 위원장(상임)
7.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광역/기초 각 1인)
8.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협의회 대표(광역/기초 각 1인)
9.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상임)
10. 임명직 당무위원(당무위원 재적 10% 내)
③ 제2항 제10호의 임명직 당무위원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4조(당무위원회 의장)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 등 전국대의원대회 안건 발의
3.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4. 당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5.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6. 시·도당 창당 승인 및 사고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7. 직능·의제조직 설치, 해산 승인 및 사고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8.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9.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동의
10.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11. 공직선거후보자 인준(재선거, 보궐선거 후보자)
12.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13. 기타 중요한 당 방침 심의, 의결
14.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6조(소집) ① 정기 당무위원회는 격월로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당무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무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17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 직선으로 동시에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내에 당원 직선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단,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 사무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단,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⑥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1명
2. 원내대표 1명
3. 선출직 최고위원 3명
4.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1명
5. 임명직 최고위원 1명
③ 제2항 제5호의 임명직 최고위원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9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
4. 의원총회 소집 요구
5. 당무위원회 안건 발의
6.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국회추천(선출)임명직공직자 추천에 관한 심의, 의결
8.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0(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 주재한다.
② 당대표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 등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3. 당직자 추천권 및 임면권
4. 당 예산의 편성
5.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당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다.
⑤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대표 비서실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당대표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상임고문과 고문)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고문과 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대변인) ① 당대표는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임명한다.
② 대변인단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4조(특별기구) ① 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별기구의 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무총국

제25조(사무총국) ① 당의 일상 업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당대표를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④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26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대표는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7조(의원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당무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28조(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③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원내대표의 선출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

제29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 이사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30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수와 선출 방식 등은 당규로 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상임위원장 1인을 둔다.
⑤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⑥ 시·도당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시·도당의 창당 및 해산) 시·도당의 창당은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취소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32조(지역위원회) ① 시·도당 내에 국회의원지역구 혹은 자치구·시·군별로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로서 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③ 지역위원회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 선출,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기초조직

제33조(기초조직) ① 시·도당 내에 지역위원회 외의 직능, 의제 등을 대표하는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조직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직능·의제조직

제34조(직능·의제조직) ① 각 직능·의제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 해당 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직능·의제조직을 둔다.
② 직능·의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당 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직능·의제
2. 그 외에 당규로 정한 세부 요건
③ 직능·의제조직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당규로 정한다.
⑤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수와 선출 방식 등은 당규로 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상임위원장 1인을 둔다.
⑥ 직능·의제조직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회계

제35조(재정)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후원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중앙당후원회)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을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임명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의 수,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선거관리

제3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 권한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임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의 수,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자,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 국가선관위 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없다.
④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위원의 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공직선거후보자 선출) ① 공직선거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한다. 단,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선거인을 확대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의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당무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가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해 일괄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성 순번은 2항과 동일하다.
④ 나머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⑤ 공직선거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하거나 선거구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당무위원회에서 각 선거구, 선거인,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42조(포상)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대표가 결정한다.

제43조(징계) 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임명한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기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거치는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당기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45조(의결정족수) ① 조직진로에 관한 안건은 재석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6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내 각급 기구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당무위원회에서 청산한다.

제47조(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① 의결기관의 결의는 정당법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의결할 수 있는 해당 기관, 대상 안건, 의결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당원명부 등의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서류와 인장의 종류와 인계 기한 등은 관계 법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며 인계 절차와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2020. 1. 19.>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규 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준용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특례) ① 2020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창당준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하며 창당대회에 참석한 모든 당원이 선거권을 가진다.
② 창당대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위임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22. 11. 26.>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운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임기보장 특례) ① 당헌 개정으로 전국운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잔여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전국운영위원에 한하여 대의원 혹은 당

무위원의 자격을 보장한다. 단,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전국운영위원은 이 당헌이 의결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③ 1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은 당규가 정하는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전국운영위원회 해산에 따른 직속기관 재설치) 당헌 개정으로 전국운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출된 직속기관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당원총회 이후 첫 전국대의원대회 혹은 당무위원회에서 신규로 임명한다. 단, 해당 회의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부칙<2024.2.3.>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한하여 제15조 제7호 공직후보자 인준 권한을 당무위원회에게 위임하며, 제4조 당원, 제5조 당비 및 제41조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제43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당규를 제정하여 이를 기존 당규에 우선한다.

부칙<2024.4.30.>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